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02
----------	-------

발의연월일 : 2025. 1. 16.

발 의 자 : 허종식 · 유동수 · 박찬대
노종면 · 김교홍 · 이훈기
박 정 · 허성무 · 복기왕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사용하는 설비에 한정한다)의 설치·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의 징수) ① · ② (생 략)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의 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 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 · 사용료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 · 사 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 장 가까운 광역시 · 도 · 특별자 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③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신 · 재생에너지 설비(「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 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 호나목의 풍력을 사용하는 설 비에 한정한다)의 설치 · 운영</u>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